

2025년 성동구의회 속기보조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속기보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채용 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채용방법
속기보조	4명	2025. 6. 5. ~ 6. 27. (14일 이내)	서류심사 후 결과통보

■ 채용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2025. 4. 14.(월) ~ 4. 21.(월)	2025. 4. 14.(월) ~ 4. 24.(목)	2025. 5. 2.(금) 18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 근로 조건

- 보 수: 일급 94,232원
- 기 간: 2025. 6. 5. ~ 6. 27. 기간 중 14일 이내
- 근로시간: 1일 8시간(09:00~18:00까지, 휴게시간 12:00~13:00 제외)
- 근로장소: 성동구의회
- 담당업무: 제1차 정례회 속기록 작성

■ 응시 자격

- 한글속기 3급 이상 국가자격증 소지자(합격 시 속기기계, 노트북, 녹음기 지참)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자: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속기업무 근무경력자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25. 4. 14.(월) ~ 4. 24.(목)
접수방법	※ e-mail 접수(iamhong@sd.go.kr)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응시원서 및 이력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iamhong@sd.go.kr)로 접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 첨부양식 참조, 사진부착)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1부. (※ 첨부양식 참조) 3.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합격 시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2. 통장사본 1부.

■ 전형 방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증 등 관련서류 제출 여부를 심사하고, 속기능력 및 관련분야 근무 여부 등 채용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채용

■ 기타 사항

- 접수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또는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및 일정 등 중요 변경 사항을 개별 통보 합니다.

■ 문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회사무국 의사팀 (☎02-2286-6459)